



프랑스 대학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법 (Loi relative aux libertés et responsabilités des universités)

I. 들어가며

2007년 8월 10일 프랑스에서 「대학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법(La loi n° 2007-1199 du 10 août 2007 relative aux libertés et responsabilités des universités(loi LRU))」이 프랑스와 피용(François Fillon) 총리의 주도로 채택되었다. 이 법은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가 대통령 선거 당시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프랑스 국민에게 행한 두 가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첫째, 프랑스의 모든 대학이 각자의 학문적 우수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 대학은 직업과 능력에 근거하여 학생들이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요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프랑스와 피용 총리가 마련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 대학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이었으며 그 결과물이 바

로 「대학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법(이하 LRU법이라 한다)」이다.

대학의 임무, 대학의 운영, 그리고 예산과 인사에 관한 대학의 권한 등이 LRU법의 골격을 구성하며, LRU법이 프랑스 대학에 제시하는 전체적인 방향은 아래와 같다.

- 프랑스 대학시스템의 현대화
-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 외국학생 모집 및 외국교원 채용을 위한 요건 강화
- 대학의 실패 방지¹⁾
- 대학 운영의 개선
- 대학총장의 역할 강화

II. 대학의 임무

LRU법은 제1조에서 고등교육의 공공서비스로

*** -----

1) 현재 매년 약 90,000명의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대학 첫해에 등록한 학생의 50%가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있다. 졸업 후 1년 뒤 대학졸업자의 실업률도 53%에 이른다.



써 대학에 아래와 같은 임무를 부과하고 있다.

- 신규(초기)교육 및 계속 직업교육
- 과학과 기술연구 그리고 연구성과물에 대한 평가와 보급
- 교육지도와 취업실현
- 과학적·기술적 정보의 보급, 문화의 보급
- 유럽 건설을 위한 고등교육과 연구의 참여
- 국제협력

동 법 제1조는 프랑스 교육법전(Code de l'éducation) 제 L 123-3조를 모방한 것으로써 '교육지도와 취업실현' 그리고 '유럽건설을 위한 고등교육과 연구의 참여' 라는 항목이 LRU법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교육지도'란 대학이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고등학생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단계를 말한다. 즉, 고등학생이 사전에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조언을 구할 것을 조건으로 대학은 해당 학생이 원하는 전공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취업실현'은 교육의 내용과 학사과정을 전문화함으로써 대학이 학생 개인의 취업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II. 대학의 운영

LRU법은 교육법전에 「운영(La gouvernance)」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대학의 조

직에 관한 규칙을 개편하였다. 대학의 운영은 이른바 책사(策士) 역할을 하는 행정이사회를 중심으로 행정이사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권고적 성격을 갖는 과학이사회(Conseil scientifique)와 대학생활 및 교육 이사회(Conseil des études et de la vie universitaire)가 있다. 그리고 대학의 최고 책임자인 총장의 책임이 강화되었다.

1. 행정이사회(Conseil d'administration)²⁾

행정이사회는 대학의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대학 내 최고의 행정기관이다. 행정이사회는 예산을 편성·승인하고 대학의 내부 규정 및 시험에 관한 규칙을 채택한다. 또한 대학 기관이 체결하는 협정 및 계약을 최종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소송행위에 대한 대학총장의 참여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행정이사회는 직권으로 단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행정이사회는 20~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수는 네 가지 유형에 따라 구분되어 배분된다. LRU법 제정 이전과 이후의 행정이사회 구성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LRU법 제정 전	LRU법 제정 후
행정이사회 총 인원	30인 - 60인	20인 - 30인
학생 대표	20% - 25%	3인 - 5인(10.7% - 22.7%)
대학 행정·기술· 도서직원 대표	10% - 15%	2인 내지 3인 (6.9% - 14.3%)
대학 교수진	40% - 45%	8인 - 14인(33.3% - 53.8%)
대학 외부 인사	20% - 30%	7인 내지 8인(24.1% - 38.1%)

*** -----

2) LRU법 제7조.

2. 학술이사회(Conseil scientifique)³⁾

학술이사회는 대학의 연구정책과 연구비용의 배분과 관련하여 종전과는 달리 더 이상 행정이사회에 지침 등을 제안하지 못하며 단지 아래의 사항에 한하여 행정이사회에 자문만을 할 수 있다.

- 교육 프로그램
- 교수진 및 공석이 된 연구자 채용에 관한 자격기준
- 연구 프로그램과 연구계약
- 학위 부여

	LRU법 제정 전	LRU법 제정 후
학술이사회 총 인원	20인 - 40인	20인 - 40인
대학 교직원 대표	60% - 80%	60% - 80%
박사과정 학생대표	7.5% - 12.5%	10% - 15%
대학 외부 인사	10% - 30%	10% - 30%

3. 대학생활 및 교육 이사회(Conseil des études et de la vie universitaire)⁴⁾

대학생활 및 교육이사회 역시 다음 사항에 대한 지문 역할만을 수행한다.

- 교수법 지도와 새로운 전공분야 개설
- 교육평가
- 학생생활 요건
- 장애인학생 입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취업지도와 취업실현

대학생활 및 교육 이사회는 대학서비스센터 (Centres régionaux des oeuvres universitaires et scolaires, CROUS)와 연계하여 학생생활 문제를 담당하는 부총장을 선출한다.

4. 대학의 장(총장)⁵⁾

대학총장은 행정이사회, 대학생활 및 교육이사회 그리고 학술이사회를 주재하며 각 이사회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총장은 대학의 교직원 총원과 관련하여 대학의 연구 및 교육정책 그리고 해당 직무에 대한 지원자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거부권을 보유하며 행정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 변경을 최종 승인한다. 또한 대학총장은 대학 내 장애인에 대한 시설 및 교육의 접근가능성과 대학 시설의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LRU법 제정 전	LRU법 제정 후
자격	교원 및 이에 동등한 자격을 보유한 자	20인-교원, 연구자, 겸임·초빙교원 및 이외의 자 40인
국적	프랑스	국적 제한 없음
선출방식	행정이사회, 대학생활 및 교육이사회, 학술이사회 위원에 의해 선출	행정이사회 위원에 의해 선출
임기	5년, 임기종료 후 5년 이내에 재임 불가	4년, 1회에 한하여 재임 가능

*** -----

3) LRU법 제8조.

4) LRU법 제9조.

5) LRU법 제6조.



IV. 대학의 권한

LRU법은 두 가지 측면 즉, 대학예산과 대학구성원의 인사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을 대학에 부여한다. 아울러 졸업생의 기부행위를 장려하기 위하여 대학이 법 인격이 없는 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으며⁶⁾ 단, 기업과의 제휴를 통하여 설립되는 재단의 경우에는 법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⁷⁾

1. 예산관리⁸⁾

LRU법 제정 이후 프랑스 대학은 행정이사회의 의결, 청소년·교육·연구부(Ministère de la jeunesse, de l'Education nationale et de la Recherche)장관과 예산·회계·공직부(Ministère du Budget, des Comptes publics et de la Fonction publique) 장관의 공동 결정을 거쳐 막대한 임금을 포함한 대학 예산의 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따라서 대학의 회계는 매년 회계감사위원회에 의한 확인절차의 대상이 된다. 대학기관은 청소년·교육·연구부 장관에게 규칙적으로 예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명령(Décret)이 정한 방식에 따라 내부 문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대학은 이와 같은 예산에 대한 권한을 5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인사관리

(1) 노사동수기술위원회(Comité technique paritaire)⁹⁾

LRU법 제정으로 행정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노사동수기술위원회¹⁰⁾가 프랑스 대학에 설립된다. 동 위원회는 동 수로 행정기관의 대표자와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구성되며 공공서비스의 조직과 수행, 직원채용 및 특수한 정관 작성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한다.¹¹⁾ 노사동수기술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대학기관의 인사관리 정책 전반에 관한 권고적 역할의 수행이다. 또한 대학기관의 사회정책에 관한 통계자료가 매년 동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2) 교원채용¹²⁾

LRU법은 신속하고 개방적이며 아울러 보다 투명한 방법으로 교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종전의 전문가위원회(Les Commissions de spécialistes)

*** -----

6) LRU법 제28조, 교육법전(Code de l'éducation) 제 L 719-12조

7) LRU법 제28조, 교육법전(Code de l'éducation) 제 L 719-13조

8) LRU법 제18조.

9) LRU법 제16조.

10) Décret n°82-452 du 28 mai 1982 relatif aux comités techniques paritaires, Publication au JORF du 30 mai 1982.

11) La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2) LRU법 제19조.

를 선발위원회(Les Comités de sélection)로 대체하였다. 즉 프랑스 대학에서 시행된 기존의 교직원 채용은 연간 일정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 교원 채용의 경우 무려 18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선발위원회는 교원 및 이에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되며 단, 구성의 절반은 해당 대학기관 이외의 자이어야 한다. 동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의 추천으로 행정이사회가 최종 임명하며, 위원의 선발 시 학술이사회의 의견이 고려된다. 그리고 행정이사회는 교원의 연구 및 교육활동과 교원에게 부여될 수 있는 다른 업무간의 배분에 필요한 일반적인 원칙을 정한다.

V. 맺으며

한편 LRU법은 일부 학생 단체의 반발에 직면해 있으며, 현재 LRU법의 반대 운동으로 상당수의 대학과 고등학교 건물에 대한 출입이 차단된 상태이다. 동 법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행정이사회 구성에 있다. 즉 LRU법 제정 전 보다 학생

대표 참여율이 감소하였으며 행정이사회 구성에 대학 외부인사의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동 법이 대학의 민영화를 위해 프랑스 정부가 시도하는 첫 단계라는 것이다.

LRU법에 대한 프랑스 대학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 하다. 7개 파리대학 총장들은 LRU법을 ‘과단성 있는 전진(avancées décisives)’ 과 ‘새로운 비약(élan nouveau)’ 으로 평가하면서 이러한 비약을 깨뜨리는 것은 대학기관의 비극적인 퇴보라고 덧붙였다.¹³⁾ 하지만 대학 총장들과는 정반대로 대다수의 교수들은 LRU법이 대학간 그리고 개인간 경쟁 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대학 문화를 재구성한다는 것에 의거하여 동 법에 반대 입장을 표현한다.¹⁴⁾ LRU법의 시행을 둘러싸고 프랑스 대학 사회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정 영 진

(프랑스 주재 외국법제조사원)

*** -----

13) Le Monde, 14 novembre 2007.

14) <http://www.universite-recherche-democratie.fr>